

일본 판결

Y가 발행·판매하는 주간지의 기사가 X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성·상당성도 없다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원 고 : X

피 고 : 주식회사 Y

등 대표취체역 Z

도쿄지법 2004(7) 제15900호 손해배상청구사건

2005. 11. 11 민사 제25부 판결, 일부 인용·항소

2005년 9월 2일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33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4년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원고의 다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3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을 할 수가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1,1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4년 9월 7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는 별지1 기재의 사죄문을, 별지2 기재의 방법으로 게재하라.

제2. 사안의 개요

1. 본건은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郎, 이하 「고이즈미 수상」이라 한다)의 비서관인 원고가, 피고가 발행·판매하는 주간지인 ‘주간OO’ 2004년 5월 20일호에 게재된 「수상 비서관의 『모락 ‘리크’(リーク・leak)』에 패배한 『‘후쿠다’(福田)』」라는 제하의 기사에 의해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 변호사 비용 등 함께 1,100만 엔 및 민법 소정의 연 5부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과 함께 ‘주간OO’지에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사건이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등 (당사자가 다툼을 명백히 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한다).

(1) 당사자

① 원고 : 원고는 1972년 고이즈미 수상의 첫 당선과 함께 그의 비서가 된 후 ‘다케시다’(竹下)내각, ‘우노’(宇野)내각, 제2·제3차 ‘하시모토’(橋本) 내각에서 후생대신 비서관을 했으며,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이 탄생하면서 수석비서관에 취임했다.

② 피고 : 피고는 서적 및 잡지의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며, 주간지 ‘주간OO’을 발행, 판매하고 있다.

(2) 본건기사의 게재

피고는 2004년 5월 13일 발행의 주간지 ‘주간OO’ 5월 20일호(이하 「본건잡지」로 한다)에 다음과 같은 게재를 포함한 기사(이하 「본건기사」로 한다)를 게재했다.

① 본건잡지 28쪽 1단에서 2단에 걸친 소재목 부분 「수상비서관의 『모략 ‘리크’(リ-ク)』에 패배한 『‘후쿠다’(福田)』」

② 본건잡지 28쪽 1단에서 2단에 걸친 기사요지의 기재

“진짜 적(敵)은 집안에 있다 - ‘세익스피어’가 수없이 묘사한 궁정 내의 계략은, 인간 내면의 심리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에 세간의 이목을 크게 집중시킨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의 사임극도 또한 그와 같은 것. 「관저(官邸)의 ‘히틀러」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을 실각시킨 것은, 당신 쪽 인물의 모략이었던 것 같다. 놀랍게도 ‘후쿠다’ 씨의 연금미납정보를 주간지에 ‘리크’한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측근 중의 측근, X 수석비서관이었다고 한다”.

③ 본건잡지 29쪽 1단 짜리의 기사의 기재

“그러면, 이번의 사정에 관해, 미납기사가 보도된 경위를 알고 있는 관계자가 해설한다. 「X씨는 지금까지 4번이나 후생대신을 지낸 고이즈미 씨 아래에서 정무비서관을 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후생노동성에는 독자적인 굵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그것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수한 것 같다. 그런데 ‘후쿠다’ 씨의 미납기간을 이미 밝혀진 것 이외에 또 알게 되었으며, ‘후쿠다’ 씨를 추궁하기 위해 이 정보를 ‘리크’한 것이다.」 바로 ‘오세로’에 등장하는 간신투의 계략인 셈이다”.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1) (본건기사의 게재에 의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유무)에 관하여

(1) 본건기사는, 원고가 후생대신의 정무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후생성 내에 갖고 있는 독자적인 인맥을 이용하여 고이즈미 정권 내에서 대립관계에 있었던 ‘후쿠다’ 전 관방장관의 연금미납정보(본건미납정보)를 입수하여 동 장관을 실각시키기 위해 이를 주간지에 누설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리고 원고의 상기 누설은 ‘후쿠다’ 전 관방장관을 실각시키기 위한 모략이며, 원고는 그러한 모략을 획책한 간신(奸臣)같은 자라고 논평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에 의하면, 원고가 내각총리대신의 비서관이라는 공적입장에 있으면서 타인의 연금미납기간이라는, 통상적으로는 알 수 없고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정보를,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입수, 자기와 대립관계에 있는 자의 실각이라는 사적(私的) 목적 때문에, 그 정보를 주간지에 누설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기사의 게재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정치의 중추에 있는 관방

장관이 이미 알려진 것 이외에도 국민연금미납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의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누설하는 것은 하등 비판 받을 일이 아니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기사는, 원고가 후생대신 비서관 당시 구축한 인맥을 이용, 후생성 관계자로부터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주간지에 누설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그곳에 적시된 본건미납정보의 입수방법은, 자기의 인맥을 이용한 부정행위라는 사실과 더불어 「'리크' 한다」는 것은, 알려질 리가 없는 비밀이나 정보 등을 특정의 의도아래 누설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부정행위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의도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을 실각시키려는데 있었다는 적시는, 독자에 대해 원고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에 있는 자를 실각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수단까지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 있는 본건미납정보를 공표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실에만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또한, 본건기사는 '후쿠다' 전 관방장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미납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누설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동 장관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상비서관의 『모략 '리크』』에 패배한 『후쿠다』」라는 본건기사의 타이틀 및 「바로 『오세로(オセロ・Othello)』에 등장하는 간신(奸臣)투의 계략이 되는 것」이라는 본건기사 본문에는 「모략 '리크」, 「간신투의 계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본건기사이외 및 본건기사 본문에 원고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을 실각시키기 위해 누설했고, 그 결과 '후쿠다' 전 관방장관은 사임압력에 내몰렸다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본건기사는, 원고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을 실각케 한다는 사리(私利)를 위해 부정하게 입수한 본건미납정보를 주간지에 누설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가지고 모략이라고 논평한 것이며, 이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상기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2. 쟁점(2) (본건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한 위법성 및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관하여

(1) 공공성 및 공익목적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비서관이 정치적으로 자신과 대립 관계에 있는 관방장관을 실각시키기 위해 동 장관과 관련 있는 본건미납정보를 부정하게 입수, 이를 주간지에 누설하여 그 결과 관방장관이 사임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다. 그리고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기사의 게재에는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진실성 또는 상당성에 관하여

① ㉔ 증인 B는 2004년 5월 8일 오전11시경 니혼바시(日本橋) 근처 '로열파크' 호텔에서 저널리스트 A와 만난 자리에서 동월 13일호 '주간XX'에 '후쿠다' 전 관방장관에 관한 본건미납정보가 특종보도된 내용을 화제로 올렸는데, 저널리스트 A는 동년 4월 하순경 원고로부터 '후쿠다' 전 관방장관의 연금미납기간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를 동 장관의 실각에 이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공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저널리스트 A는 원고에 대해, 당시 원고와 '주간XX' 간에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주간XX'에 대해 본건미납정보를 흘리면, 원고가 정보원(情報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하고, 원고와 상담 후 저널리스트 A가 '주간XX'에 본건미납정보를 흘렸다

는 사실 등을 B기자에게 말했다고 증언한다.

㉞ 그러나 본건에 있어 저널리스트A의 이름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피고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자와 정보제공자 간에 취재원을 절대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며, B기자가 저널리스트A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널리스트A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그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분명히, 보도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취재 기자와 정보제공자 간에 취재원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진실이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자가 당해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했을 때의 상황이라든가 당해 정보제공자가 당해정보를 취득한 상황을 가능한 한 명백히 밝히는 한편 당해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사정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B기자는 본건에 있어서, 저널리스트A의 이름이나 속성(屬性)을 밝히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널리스트A가 원고로부터 '후쿠다' 전 관방장관에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청취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청취하지 않았으며, 그 후 재차 저널리스트A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 B기자는 C편집장 및 D데스크에 대해, 저널리스트A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원고 등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전하기만 하여, B기자가 저널리스트A로부터 본건기사에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구체적인 상황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수가 없다.

㉟ 또 전기의 B증언에 의하면, 저널리스트A는 원고에 대해, 본건미납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할 방법을 조언, 동인의 의사를 듣고 스스로 정보 누설행위를 실행했다는 것으로, 원고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를 받고 있는 자

가 갖고 있는 극비정보를 일부러 다른 기자에게 주어, 기사화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저널리스트A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며, 가령 저널리스트A가 존재하고 동인(同人)이 이러한 정보를 B기자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사유에 비추어 보면 그 정보의 신빙성은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㊱ 을(乙)제36, 제37, 제39, 제44호증 및 증인B, 증인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B기자가 보고한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취재했음이 인정된다.

㉠ B기자는 C편집장 및 D데스크에 저널리스트A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보고했다.

㉡ D데스크는 E기자에게, 원고와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의 불화를 관계자로부터 취재하고, 더 나아가 두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 E기자는 신문기자 2명 및 원고와 가까운 저널리스트에게서 취재한 결과, 이전에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일정의 변경을 통지받지 못한 원고가 체면을 상했다고 생각되어 '후쿠다' 전 관방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어 원고가 '후쿠다' 장관에 대해 심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취재결과를 얻어냈다.

또 E기자는 2005년 5월 9일 원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를 했으나, 원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농담 말아요」 등으로 답변, 부정으로 시종했다.

이어 E기자는 '후쿠다' 전 관방장관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려고 했으나 '후쿠다' 전 장관의 부인으로부터 현시점에서는 어떠한 마스크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으므로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들었으며, 결국 그 후에도 취재를 할 수가 없었다. E기자는 취재 후 이상의 취재경위 및 결과를 데이터 원고로 정리했다.

㉣ 2005년 5월 9일 밤, '주간XX' 편집부에 대한 취재를 제외하고, 원고와 '후쿠다' 전 관방장관 등 관계

당사자에 대한 취재를 마친 단계에서, C편집장, D데스크 및 B기자가 협의한 결과, C편집장은, 저널리스트A가 가져온 내용은 극히 신빙성이 높고, 진실하면서 신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밖의 신문기자나 저널리스트에 대한 취재 결과와 방증도 이를 보장하고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D데스크에게 본건 기사를 집필하도록 지시했다.

D데스크는 다음날인 10일 '주간XX' 편집부의 반응을 소개하는 '코멘트' 부분을 비운 형태로 본건 기사 원고를 집필했다.

㉔ E기자가 몸이 아파, 갑자기 F기자가 대신하여 '주간XX'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되어, 2005년 5월 10일 '주간XX'에 대해 저널리스트A로부터 얻은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팩스'로 취재신청을 했다.

'주간XX' 편집부로부터는 동일 중에 '주간XX'의 기사를 담당 한 I기자를 통해 「물론 정보원에 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다만 X비서관과는 별건(別件)으로 계쟁(係爭)중이며, 귀지(貴誌)의 억측은 논외(論外)」라는 회답이 '팩스'로 보내져 왔다.

㉕ D데스크는 상기 원고에 '주간XX' 편집부로부터 보내온 상기 ㉔의 회답에 근거한 부분을 첨가하여 본건 기사 원고를 완성시켰다.

㉓ 원고가 '주간XX'에 대해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누설했다는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고가 행한 취재는 이상과 같은 것인데, 그 결과는 원고나 '주간XX' 편집부 모두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고, 더구나 '후쿠다' 전 관방장관은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B기자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저널리스트A에게 재차 취재하여, 원고로부터 본건미납정보의 누설을 의뢰받았을 때의 보다 구체적인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㉔ D데스크는 상기 ㉒ ㉕의 '주간XX' 편집부로부터의 회답에 관해, 정보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명확하게 다르다는 회답이 아니었

다는 점, 원고와의 사이에 소송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굳이 전면에서 내세우는 등, 예상했던대로의 회답이었다고 판단, 역으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취재에 대한 '주간XX' 편집부로부터의 회답서에, 원고와의 사이에 소송이 걸려있으므로 논의라고 기재되어 있어, 역으로 의문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입증할만한 사실의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채 다수의 독자가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간지에 본건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취재가 극히 불충분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㉕ 피고는, 원고가 후생노동성 내에 독자적인 인맥을 갖고 있으면서,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후쿠다' 전 장관과 대립관계에 있고, 또 원고는 '매스컴' 조작에 뛰어나 동 장관에게 불리한 정보를 누설하여 관방장관의 지위에서 실각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주간XX'에 누설했다고 믿는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령 상기 피고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입증할만한 취재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고는 할 수 없다.

㉖ 피고는, 보도되는 쪽이 공인일 경우, 보도기관에 의해 자기의 인격에 의문이 드러났을 경우, 그에 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하게 진실성을 입증할 수가 없더라도, 당해 의념(疑念), 의혹을 의심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진실이라고 믿는데 충분하고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보도기관을 면책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피고는 B기자가 저널리스트A로부터 들었다는 정보의 입증 취재를 하려고 했으나,

취재결과는 모두 부정되거나 취재 자체가 거부되어 정보를 입증할 결과는 얻어낼 수 없었고, 달리 입증 조사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령 피고가 주장하는 판단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미납정보를 '주간XX'에 누설했다는 의념, 의혹을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⑦ 이상과 같이 본다면, 원고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주간XX'에 누설했다는 사실은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어 본건기사의 게재에 대해서는 위법성 및 고의·과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⑧ 「수상비서관의 『모략 '리크』』에 패배한 『후쿠다』라는 본건기사의 '타이틀' 및 「바로 '오세로」에 등장하는 간신투의 계약이 되는 것」이라는 본건기사 본문의 기술은, 원고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의 본건연금미납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이다.

그런데 특정한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었을 경우,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때에는, 인신공격에 미치는 등 의견 또는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위법성이 없게 되며, 가령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을 때에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 또는 과실은 부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1997년 9월 9일 판결).

본건에 있어서는 전기와 같이 피고가 논평의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본건기사의 논평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및 고의·과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⑨ 이상과 같이, 피고는 본건잡지에 본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했으며,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쟁점(3) (손해액 및 사죄광고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본건기사의 기재내용, 게재양태, 본건기사가 게재된 매체의 종류, 반포(頒布)방법,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본건기사 게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사(慰謝)하기에 충분한 위자료는 300만 엔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본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상기 위자료의 10%에 해당하는 30만 엔의 변호사 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본건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죄광고를 게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4. 결 론

이상에 의하면 본소(本訴) 청구는 330만 엔 및 이에 대한 소장(訴狀) 송달일의 다음날인 2004년 9월 7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61조, 64조 본문을, 가집행의 선언에 대해서는 동법 259조 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230호(2007. 4. 1.) pp. 243~250.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